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소방방재청공고 제2005 - 62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8. 17 ~ 9. 6
- 관련문의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Tel.02-3703-5247)
-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http://www.nema.go.kr/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상반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종합정밀점검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은 연1회 실시하되, 종합정밀점검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날부터 6월이 되는 달에, 그 밖의 대상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하도록 하고,
-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상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달 까지 실시하도록 하며,
- 다.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년도부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u>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u>손실보상청구서</u>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p> <p>1. · 2. (생략)</p> <p>②시·도지사는 <u>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p>	<p style="text-align: center;"><u>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 -----</p> <p>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①----- ----- ----- ----- <u>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손실보상청구서를 포함한다)</u>----- <u>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u>----- -----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u>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 -----</p> <p>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 ----- -----</p>

현행	개정안
<p>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p>	<p>----- ----- ----- ----- -----</p>
<p>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의 경우 : <u>건축법</u>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u>건축법</u>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u>주택법</u>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u>학교시설사업촉진법</u>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p>	<p>1. ----- ----- ----- -----<u>「건축법」</u>----- -----<u>「건축법」</u>----- -----<u>「주택법」</u>----- ----- -----<u>「학교시설 사업 촉진법」</u>----- ----- ----- -----</p>
<p>2.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의 경우 : <u>고압가스안전관리법</u> 제4조, <u>도시가스사업법</u> 제3조 또는 <u>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u>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p>	<p>2. ----- -----<u>「고압가스안전관리법」</u>----- -----<u>「도시가스사업법」</u>-----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p>
<p>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하구의 경우 :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u>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p>	<p>3. ----- -----<u>「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p>
<p>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p>	<p>②----- ----- ----- ----- -----<u>동의요구서</u> <u>(전자문서로 된 동의요구서를 포함한다)</u>-----<u>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u>----- <u>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u></p>

현행	개정안
<p>1.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p> <p>2. ~ 4. (생략)</p> <p>③ ~ ⑥ (생략)</p> <p>제6조(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u>소방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u>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단서신설〉</u></p> <p>1. ~ 3. (생략)</p> <p>②·③ (생략)</p> <p>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u>를 접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u>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u>를 발급한 때</p>	<p><u>법률</u>]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p>1. 「<u>건축법 시행규칙</u>」 -----</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6조(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등) ①-----</p> <p>-----<u>소방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u>[전자문서로 된 <u>소방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u>를 포함한다]-----<u>서류</u>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p> <p>-----<u>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u>[전자문서로 된 <u>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u>를 포함한다]</p>

현행	개정
<p> <u>첨)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 </p>	<p>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 ③-----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 ----- -----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를 포함한다)-----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서류(전자문서 </p>

현행	개정
<p>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p> <p>6.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p> <p>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u>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u>에 다음 각호의 <u>서류</u>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단서신설></u></p> <p>1. ~ 3. (생략)</p> <p>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① (생략) ②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p>	<p>-----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p> <p>6. 「<u>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u>」-----</p> <p>-----</p> <p>-----</p> <p>-----</p> <p>-----</p> <p>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p> <p>-----</p> <p>-----</p> <p>-----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p> <p>-----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p>-----</p> <p>-----</p>

현행	개정
<p>1. ~ 4. (생략) ② (생략)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생략) ② 소방방재청장은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p>	<p>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생략) ② ----- ----- ----- ----- 「정기간행물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p>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개정 공포·시행 안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19일자로 개정(대통령령 제 19009호)·공포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장은 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년 1회 이상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사·정기검사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받도록 개정된 것입니다(제15조제3항).

따라서, 공공기관은 8월 19일부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현행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점검을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점검 사항은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의 : 제도연구실 884-1863]